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91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3. 5. 30.
4. 회부일자 : 2023. 6. 1.

Ⅱ. 개정이유

○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서면의결 조항 신설

○ 교육지원청 구분 정정(별표1 성북교육지원청, 별표3 지역교육청)

○ 유치원 3개원(서울개포유치원 외 2개원), 초등학교 4개교(서울개포초등학교 외 3개교) 주소 정정

○ 2023. 9. 1.자 고등학교 1개교(서울전자고등학교) 교명 변경

○ 2023. 9. 1.자 병설유치원 1개원(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Ⅲ. 주요내용

1. 제9조(위원회의 운영) (안 본문)

□ 조항 신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③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초등학교 구분 및 위치 (안 별표 1)

□ 구분 정정: 1개청

○ **성북교육지원청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주소 정정: 4개교

○ **서울신남초등학교: 양천구 절골8길 33 → 양천구 남부순환로 83길 44**

○ **서울개포초등학교: 강남구 영동대로3길 45 → 강남구 삼성로4길 30**

○ **서울길원초등학교: 성북구 서경로8길 28-15 → 성북구 길음로 15길 55**

○ **서울안암초등학교: 성북구 인촌로7가길 39→ 성북구 고려대로 7가길 39**

3. 고등학교 명칭 (안 별표 3)

□ **구분 정정: 1개청**

○ **지역교육청 → 교육지원청**

□ **교명 변경: 1개교**

○ **서울전자고등학교 →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

4.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 **신설: 1개원**

○ **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노원구 월계로45가길 10)**

□ **주소 정정: 3개원**

○ **서울노일유치원: 노원구 동일로 231길 24 → 노원구 동일로**

231길 26

○ 서울개포유치원: 강남구 영동대로3길 45 → 강남구 삼성로4길 20

○ 서울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북구 서경로8길 28-15 → 성북구 길음로15길 55

Ⅳ. 참고사항

1. 관계법규: (별첨 6)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 사무) 제34조(하급교육행정 기관의 설치 등)

2. 예산조치: 해당 없음(별첨 2)

3. 협　　의: 해당기관 없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나.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별첨 3)

라.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계획 수용 완료(별첨 4)

마.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교명 변경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완료(별첨 5)

바. 입법예고(2023. 4. 20. ~ 2023. 5. 10.) 결과: 의견 없음(별첨 7)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919호로 제출되어 2023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서면의결 조항을 신설하고 2023년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 1개원(월계초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고등학교 1개교(서울전자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 초등학교 4개교 및 유치원 3개교의 주소 정정 등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서면의결 조항 신설에 대한 검토

○ 먼저 동 조례안 제9조제3항은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긴급하거나 경미한 상황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있어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창궐, 대규모 안전사고의 발생 등으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현재 상당수의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청내 일부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1)]

---

1) 예를 들어「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5조에 서면심의에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서면의결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바, 교육청은 이러한 근거규정의 부재로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평소보다 적은 각각 2회와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2].

○ 이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불가피한 외부환경으로 인해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하여 서면의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것은 그 취지면에서 일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이미 기본조례인「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위원회 설치 조례 제10조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 그리고 위원회 설치 조례에는 서면 회의가 가능한 경우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음.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최소 3회에서 4회에 거쳐 개최 됨.

3)「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회의의 운영)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서면 회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동 조례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의 요건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 의결 요건을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여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의 규정을 퇴색시키고 서면 의결이 남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그 위원회 운영에 있어 서면 의결이 필요하다면 안 제9조제3항은 삭제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제10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중 학교 신설의 건은 2023년 9월 1일자로 개원 예정인 서울월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월계초병설유치원)의 신설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월계초병설유치원은 노원구 월계2동에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월계초내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동 유치원 설립 지역인 북부9취학권역은 현재 공립유치원 정원(170명)이 취학수요(808명)보다 상당히 부족(△638)하며, 동 권역의 공립유치원 유아수용률(12.0%)은 북부 지역 전체 공립유치원 유아수용률(16.3%)[4]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 현재 월계초병설유치원 건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전부 거쳤고, 2023년 6월 기준 공정율은 90%, 준공예정일

4) 북부교육지원청의 취원대상 유아수(12,184명) 대비 공립유치원 정원은 1,987명으로 공립유치원 유아수용률은 16.3%임.

은 2023년도 7월 20일로 9월 개원에도 문제가 없는바, 동 건은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취학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북부9취학권역 유치원 취학 수요

취학권역		유치원 정원			취학수요(명)		유치원 유아 수용률 (%)	공립유 유아 수용률 (%)
동	취원대상 유아수(명)	유형별	시설수 (개)	정원(명)	공립 희망	공립 과부족		
창3동 월계1~3동	1,411	공립	10	170	808	-638	75.3%	12.0%
		사립	38	892				
		계	48	1,062				

[표-2] 월계초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현황

자체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착공	공정율 ('23.6월기준)	준공
2019. 9. 18.	2020. 4. 29.	2021. 12. 27.	90%	2023. 7. 20. 예정
			내부마감공사중	

다. 학교(서울전자고등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

○ 서울전자고등학교(이하 '서울전자고') 교명 변경의 건은 서울전자고의 2024학년도 학과 개편에 따라 개설 예정 학과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명을 '서울전자고'에서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서울전자고'는 스마트시스템과, 조명아트과, 게임콘텐츠과, 미디어아트과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입생 충원율이 2020년 54.0%, 2021년 34.4%, 2022년 26.3%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타 시·도의 웹툰·애니메이션 계열 특성화고는 입학 경쟁률이 최하 2.1대 1에서 최고 6.5대 1까지 높은 상황인바[5],

'서울전자고'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22년에 기존의 스마트시스템과, 조명아트과, 미디어아트과를 폐지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콘텐츠과'를 유지하고 '웹툰과'와 '애니메이션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전자고는 교명 변경을 위해 학교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설문 참여 인원의 97.3%가 교명 변경에 찬성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교명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전자고의 교명을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바[6], 동 교명은 현재 개편된 학과에 부합되는 교명으로 사료되는바, 교명변경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3] 교명 변경에 대한 학교구성원 의견 조사 결과

구분	대상인원	의견 제출인원	찬성		반대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5) 타 시도 웹툰/애니메이션 계열 특성화고 입학 경쟁률(2022년도)

학교명	학과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한국애니메이션고	만화창작과	26	117	4.5 : 1
	애니메이션과	26	169	6.5 : 1
강원애니메이션고	문화콘체츠과 (애니메이션과, 만화창작과, 영상제작과)	120	426	3.6 : 1
울산애니원고	만화창작과	22	47	2.1 : 1
	애니메이션과	44	97	2.2 : 1

6)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7) 서울 및 경기 지역 중학교(105개교) 학생 및 교사 대상 설문실시
8) 동문회 미구성으로 동문회장 및 임원진 의견으로 대체

구분	대상인원	의견 제출인원	찬성		반대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재학생	136	112	93	83.0	19	17.0
학부모	136	25	23	92.0	2	8.0
교직원	65	63	63	100	0	0
3학년 중학생[7]	183	183	183	100	0	0
중학교 교사	377	377	377	100	0	0
졸업생(동문회)[8]	5	5	5	100	0	0
계	902	765	744	97.3	21	2.7

[표-4] 교명 변경 철차

절차	일자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3.2.21.	원안가결
이해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	2022.9.19. ~ 2022.9.23.	교명변경 찬성율 97.3%
본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	2023. 4. 4.	원안가결
입법예고	2023.4.20. ~ 5.10.	별도의견 없음

라. 주소 정정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주소 정정의 건은 유치원 3개원(서울노일유치원, 서울개포유치원, 서울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4개교(서울신남초등학교, 서울개포초등학교, 서울길원초등학교, 서울안암초등학교)로,

이는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2022.9.26.)에서 조례에 잘못 기재된 주소명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지적됨[9]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10].

9)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2022.9.26.).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

○ 먼저, 서울길원초등학교(이하 ‘길원초’) 및 서울길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길원초병설유치원’)은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가 ‘서경로8길 28-15’에서 ‘길음로15길 55’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신남초등학교(이하 ‘신남초’)는 신정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도로명주소가 ‘절골8길 33’에서 ‘남부순환로83길 4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길원초 및 길원초병설유치원 주소 변경 현황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11]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서경로8길 28-15	성북구 길음로15길 55	2019.2.7.	도로구간 폐지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표-6] 신남초 주소 변경 현황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12]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절골로8길 33	남부순환로83길 44	2020.2.27.	남부순환로83길 도로 구간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

○ 또한 서울개포초등학교(이하 ‘개포초’) 및 서울개포유치원(이하 ‘개포유치원’)은 개포주공아파트 3·4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2017년부터 휴교 상태였다가 2023년 3월 1일 재개교하면서 기존 도로명주소가 ‘영동대로3길 45’에서 ‘삼성로4길 30’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2022).「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학교 위치 전수조사 결과 보고.
11) 성북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9-24호).
12) 양천구 도로명주소 고지문(2020.2.20.)

[표-7] 개포초 및 개포유치원 주소 변경 현황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13]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영동대로3길 45	삼성로4길 30	2023.2.17.	삼성로4길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

○ 마지막으로 서울노일유치원(이하 ‘노일유치원’)은 개원 당시 노일중학교와 분리된 지번주소를 사용하였으나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시 노일중학교와 동일한 도로명주소로 잘못 반영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노일유치원의 잘못 기재된 도로명주소를 노일유치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이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일괄 반영시 노일유치원과 같이 건축물 대장과 다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8] 노일유치원 주소 변경 현황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갈현로15길 51	갈현로15길 47	2022.3.17.	건물군 일부 건물번호 변경

○ 한편 안 별표1 및 안 별표3의 정정의 건은 각각 ‘성북교육지원청’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그동안 조례에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주소명 정정 등 오기 정정을 위해 매년 수차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사한 유형의 정정의 건

13) 강남구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고 고시 제2023-34호).

이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 2180-8270